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2001297(본소), 2022나2001303(반소) 판결
[채권양도등 청구의 소 · 매매대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2001297(본소), 2022나2001303(반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7가합106658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구

담당변호사 이석중

피고(반소원고), 항소인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선주

변론 종결 2022. 10. 27.

판결 선고 2022. 12. 8.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7가합106658(본소),
2017가합113335(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한국산업은행은 81,372,925원, 원고(반소피고)

한국수출입은행은 6,408,008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1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8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부 대 항 소 취 지

청 구 취 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가. 원고(반소피고) 한국산업은행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과 주식의 85.30/100 지분을,

원고(반소피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과 주식의 6.72/100 지분을 각

양도하고, B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과 주식을 위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한국산업은행에게 1,544,446,789원 및 그중

306,070,42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82,513,600원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7.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74,324,800원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20. 1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66,136,000원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0. 1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15,401,968원에 대하여 2020. 12. 22.부터 2021. 4.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에게 121,672,712원 및 그중 24,112,46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256,640원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7.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1,611,520원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20. 1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966,400원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0. 1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2,725,688원에 대하여 2020. 12. 22.부터 2021. 4.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피고에게, 원고 한국산업은행은 6,489,000,000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은 51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에게 원고 한국산업은행은 1,722,034,447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은 135,607,8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은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반소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부 대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에게 원고 한국산업은행은 830,441,042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은 65,396,112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매수가격 결정의 기준시점을 2013. 7. 31.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별지2 계산표를 "별지2 계산표"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 제14면 제2행, 제18면 아래에서 제5행, 제27면 제3행의 "165,910,408,273원"을 "172,756,586,555원"으로 고쳐 쓰며, 제1심판결 제18면 아래에서 제4행, 제27면 제4, 5행, 제28면 제2행의 "1,042,823,634원"을 "1,130,604,567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1행~제18행의 "감정인은 .. 어렵다." 부분을 "감정인은 이 법원에서 재감정을 하면서 기술교육원을 인근 공동주택에 대한 낙찰률 64.33%를 적용하였는데, 기술교육원은 L와 약 10km 이상 떨어진 마을에 위치하고 건물의 70% 이상이 사원주택으로

주거용도인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상업용도인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이 기술교육원을 인근 공동주택과 유사한 낙찰률을 산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감정인의 위와 같은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2면 제7행의 "..이유 없다." 부분을 "..이유 없다(피고는 제4차 E협의회 결의 당시 '회사가 취득하는 일체의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는 신규자금 분담지원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담보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주채권자인 원고 한국산업은행은 위 의결사항에 따라 공동담보로 취득한 것이고, 만일 원고 한국산업은행이 단독 명의로 담보를 취득한 것이라면 위 의결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4차 E협의회 결의 당시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에 원활한 선박건조를 위하여 회사가 취득하는 일체의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는 신규자금 분담지원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담보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결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시설물은 원활한 선박건조를 위하여 회사 등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중 취득한 시설 및 설비가 아니라 공동관리절차 이전부터 존재한 기존의 시설 및 설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한국산업은행이 이 사건 시설물을 위 의결사항에 따라 공동담보로 취득한 것이라거나 위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3면 제11행의 "..한다." 부분을 "..한다(피고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자산의 청산가치에 관하여도 피담보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E협의회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권최고액의 분담비율을 원고 한국산업은행 60.90%, 원고 한국수출입은행 10.10%, 피고 2.40%, D은행 16.20%, C은행 10.40%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약정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준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별도로 미리 지분비율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8면 제6행~제10행의 "따라서.. 있다." 부분을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는 연대채무이나(구 기촉법 제20조 제2항),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지분비율로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원고 한국산업은행은 1,048,070,433원(=1,130,604,567원 × 92.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은 82,534,133원(=1,130,604,567원 × 7.3%)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에게 원고 한국산업은행은 제1심에서 인용된 966,697,508원과 이 법원에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81,372,925원(= 1,048,070,433원 - 966,697,508원)을, 원고(반소피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제1심에서 인용된 76,126,125원과 이 법원에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6,408,008원(= 82,534,133원 - 76,126,1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차문호

판사이양희

판사김경애

별지